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64호
----------	--------

제출년월일 2025. 1.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김포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자 함.
- 자살예방의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추가하여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건강한 삶을 보장” 에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 으로 변경하여 자살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과 예방정책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나. 자살예방시행계획 내용 추가(안 제5조)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 다.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추가(안 제6조)
- 라. 그 밖에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11. 13. ~ 12. 3.(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나) 경 기 도 : 정신건강과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이하 “생명존중”이라 한다)”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으로, “건
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
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시민의 의무)”를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립 시행하는”을 “수립·시행하는”으
로 한다.

- ①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
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5조의 제목 “(생명존중추진계획 수립)”을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
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생명존중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
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계획”을 “시

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추진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김포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2항 중 “「김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를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를 “정신건강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를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명존중 교육을”을 “시민에게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으로, 제2항 중 “생명존중 교육”을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보건사업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팀장 직위·성명	보건사업팀장 심필기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간호서기 이미나(☎412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이하 “생명존중”이라 한다)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u>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u>」에 따라 <u>자살예방</u>----- ----- ----- <u>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u>자</u>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u>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u>를 말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u>사람을</u> -----. 3. “자살위험자”란 <u>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u>을 말한다.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u>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한다.</u></p> <p>② <u>시장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u>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제4조(시민의 의무) <신 설></p>	<p>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u>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u></p>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생명존중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생명존중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3. (생략)
4.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5. (생략)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
수립·시행하는 -----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생명존중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시행계획-----
-----.

1.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3. (현행과 같음)
4.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5. (현행과 같음)

③ ----- 시행계획 -----

-----.

④ ----- 시행계획-----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신 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시장은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김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구성된 김포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행계획-----.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김포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
 ----- 정신건강운영위원회-----
 -----.

제7조 ~ 제9조 (생 략)

제10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 략)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 제14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11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① ---
- 시민에게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

②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

제12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예산의 지원) -----

----- 범위-----

제14조 · 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2022. 12. 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6. 11.>]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시책

여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이하 “생명존중“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생명존중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생명존중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상담·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김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구성된 김포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사생활보호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